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67
----------	------

제출일자: 2018. 3. 27.
제출자: 달성군의회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가.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개정(법률 제15528호, 2018. 3. 27. 공포, 6. 28. 시행)으로 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범위가 예산의 전 과정에 대한 참여로 확대되었고

나.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음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당연직 공무원의 비중을 줄이고, 위촉직 위원 구성 방식을 공모·추첨으로 하여 주민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며

다. 주민들의 숙의가 가능하도록 주민참여예산기구(분과위원회 및 읍·면별 지역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라. 현행 제도 운영과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2018. 3. 27. 공포, 6. 28. 시행)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제의 범위 개정(“예산편성 과정”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안 제1조~제5조, 제7조~8조, 제10조)

나. 주민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비중을 늘리고, 구성 방식을 추천에서 공모·추천 방법으로 개정(안 제 11조)

다. 분과위원회 구성에 따른 조문 신설(안 제17조)

라. 지역회의 구성에 따른 조문 신설

1) 지역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0조)

2) 지역회의 기능(안 제21조)

3) 지역회의 회의소집 및 의결(안 제22조)

마. 현행 제도 운영과정 보완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에 “예산집행 과정의 모니터링 및 결과의 평가” 기능 추가(안 제14조)

2)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주민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조문 개정(안 제18조)

3)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문 신설(안 제19조)

4)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정 및 실무지원 조항 보완(안 제2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나.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2) 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

3)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9. 2. 1. ~ 2. 21.(20일간)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6) 비용추계서: 생략(「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제1호에 따름)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중 “예산편성 과정”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하고, 제3조 중 “예산편성 시”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한”으로 한다.

제4조 중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로 하고, 제5조 중 “예산편성”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제7조제1항, 제8조 및 제10조 중 “예산편성”을 각각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1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부군수, 자치행정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책관광국장,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1.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
2.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읍·면별 각 1명으로 한다)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제11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제1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공개모집 하는 경우, 선정기준, 모집기간 및 선정 인원 등을 미리 군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공고 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공개모집 절차에 지원한 총 인원이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군수는 공개추첨을 통해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추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예산집행 과정의 모니터링 및 결과의 평가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1.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과 관련하여 회의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군수가 예산활동 등과 관련된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운영원칙) 위원회의 운영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건전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사적인 목적에 의한 위원회 활동 배제

5. 예산안 심의 및 편성에 대한 군의회와 군수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8조(중전의 제17조)중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을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주민을”로 한다.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23조부터 제25조로 하고, 제17조 및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분야별로 각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별로 분과위원장 1명, 분과부위원장 1명을 둔다.

- ③ 각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각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 ⑤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각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회의 및 회의록의 공개)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의결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의 기재사항 중 전항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부분 공개할 수 있다.

제20조(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성별,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③ 지역회의 위원은 해당 읍·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이장,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구성하되 주민

자치위원회 위원 및 이장의 수가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없다.

④ 지역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지역회의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회의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 읍·면 의 부읍·면장으로 한다.

⑥ 읍·면장은 지역회의에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활동, 설명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1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2. 지역회의 제안사업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의결
3.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2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지역회의의 위원장은 군 예산편성이 전 또는 필요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23조(중전의 제1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주민예산학교

제23조(중전의 제18조)제1항 중 “위원회 위원”을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 및 지역회의”로 한다.

제24조(중전의 제1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지원

제24조(중전의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위원회”를 각각 “위원회 및 지역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를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예산학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u>제1장 총칙</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u>예산편성 과정</u> 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예산편성 등 예산과정</u> ————— —————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u>예산편성 시 주민참여</u>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을 위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법령준수의무)————— <u>예산편성 등 예산과정</u>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에 <u>대한</u> ————— —————
제4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u>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u>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 <u>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u> ————— ————— —————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u>예산편성</u> 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주민의 권리) ————— ————— <u>예산편성 등 예산과정</u> ————— —————
<신설>	<u>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u>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u>예산편설</u> 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생략)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 <u>예산편성 등 예산과정</u> ————— ————— ②(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견 제출) 군의 <u>예산편성과</u>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의한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 제출) —— <u>예산편성 등 예산과정</u> ————— ————— ————— —————
<신설>	<u>제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u>
제10조(설치) 군수는 <u>예산편성에</u>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설치) —— <u>예산편성 등 예산과정</u> ————— ————— ————— —————
제11조(구성) ① ~ ② (생략) ③ <u>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부군수, 자치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주민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책관광국장,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면별 1명 이내로 한다</u> <u>1. 군수가 추천한 사람</u> <u>2.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u> <u>3.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u>	제11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부군수, 자치행정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책관광국장,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u> <u>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u> <u>2.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읍·면별 각 1명)</u> <u>3.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u>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④(생략) <신설> <신설>	④(현행과 같음) ⑤ 제3항제1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공개모집 하는 경우, 선정기 준, 모집기간 및 선정 인원 등을 미리 군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공고 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공개모집 절차에 지원한 총 인원이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군수는 공개추첨을 통해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추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 3.(생략) <신설>	제14조(기능) _____ 1.~ 3.(현행과 같음) 4.예산집행 과정의 모니터링 및 결과의 평가
4.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5. _____ 6. _____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5.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1.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과 관련하여 회의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군수가 예산활동 등과 관련된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군수가 위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요구하는 때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운영원칙) 위원회의 운영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건전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4. 정치적·사적인 목적에 의한 위원회 활동 배제 5. 예산안 심의 및 편성에 대한 군 의회와 군수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분야별로 각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별로 분과위원장 1명, 분과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③ 각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각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각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자료제출 및 협조)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u>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u>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자료제출 및 협조) _____ _____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주민을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9조(회의 및 회의록의 공개)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의결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의 기재사항 중 전항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부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제4장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신설>	제20조(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성별,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③ 지역회의 위원은 해당 읍·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이장, 지역회의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구성하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이장의 수가 전체 인원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없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④ <u>지역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지역회의의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회의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간사는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u> ⑤ <u>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 읍·면의 부읍·면장으로 한다. 간사는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u> ⑥ <u>읍·면장은 지역회의에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활동, 설명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u>
<신설>	<u>제21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u> <u>1.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u> <u>2. 지역회의 제안사업 내용과 우선순위에 대한 의결</u> <u>3.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u>
<신설>	<u>제22조(회의소집 및 의결)</u> ① <u>위원장은 군 예산편성 이전 또는 필요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개최한다.</u> ② <u>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u>
<신설>	<u>제5장 주민예산학교</u>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18조</u>(주민예산학교) ① 군수는 예산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민과 <u>위원회</u> <u>위원</u>을 대상으로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예산학교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u>위원회</u>와 협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u>제23조</u>(주민예산학교) ① <u>위원회</u> <u>및 지역회의 위원</u> ② <u>위원회 및 지역회의</u>
<신설>	<u>제6장 지원</u>
<u>제19조</u>(재정 및 실무지원) ① 군수는 <u>위원회</u>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u>위원회</u>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u>설명회</u>, <u>공청회</u>, <u>토론회</u>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주민참여예산 위촉직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달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u>제24조</u>(재정 및 실무지원) ① <u>위원회 및 지역회의</u> ② <u>위원회 및 지역회의</u> <u>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예산학교</u> ③
<u>제20조</u>(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u>제25조</u>(시행규칙)

□ 지방재정법 제39조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3., 2018. 3. 27.>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 3. 27.>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8. 3. 27.>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3., 2017. 7. 26., 2018. 3. 27.>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8. 3. 27.>[전문개정 2011. 8. 4.][제목개정 2018. 3. 27.]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